

1993.11.24

증명서	수령자	날짜
W3	A5	

「성명서」

우리는 반인권적인 법무부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노동자 벌금법 정책때문에 사망한 중국교포 고 임호씨의 죽음을 슬퍼하며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는 고 임호씨를 비롯하여 이땅에 와서 함께 고난당하는 한 혈육들인 중국교포들의 참상을 한 민족성원으로서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민족성원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한다.

오늘 우리 한국사회는 경제주의의 열병에 걸려서 누가 자기의 가족인지, 무엇이 선악인지를 가리지도 못하는 지경에 다달았다. 지금 한국사회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공식적으로 7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늘 우리사회에서 불법취업자로 불리우고 있지만 언론과 정부당국의 발언을 통해서도 익히 알 수 있듯이 이들은 한국경제의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부분에서 일하도록 국가적인 이익이라는 필요에 의해 묵인되고 양성되어 왔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사회(정부, 언론, 시민, 교회)가 마치 이들이 죄인이나 되는양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만을 부각시키고, 산업현장에서 이들을 인간이하의 노예로 대접하는 내국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 한번 하는 경향이 없다는데 대하여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목동출입국관리소가 부과한 180만원이라는 과도한 벌금에 못이겨 11월 10일 오전9시 여등포 구청 로터리 고가도로에서 차도로 뛰어내려 사망한 연변교포 고 임호씨의 죽음은, 외국인노동자의 피와 땀만을 갈취하고, 인간적인 권리는 하나도 주지 않은채 노예노동을 시키다가, 출국할때는 불법취업자라는 굴레를 씌어서 벌어놓은 임금을 빼앗아버리는, 경제성장주의의 중병에 걸린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시민 사회의 욕심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날 우리는 약소민족으로 식민지 노예생활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약간의 경제성장을 누리면서 지난 과거의 노예생활을 망각하고 약자를 더욱 억누르고 빙박하는 교만한 민족이 되고 있다. 일제치하에서 민족을 신사참배로, 부녀들을 정신대로 내몰며 이것을 친양해 마지않았던 시인, 학자, 종교인들과 간신배 무리들이 아직 까지도 이땅에서 역사의 주인인양 머것이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바탕에, 그것도 다름이 아닌, 식민지 시대에 일제의 침탈에 쫓겨, 이방땅에서 난민으로 고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중국동포에게는 이런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는데서 우리는 민족사상이 붕괴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는 일터에서 일하라고 뻔히 묵인하고 방조하면서, 거기에는 가 출국하고자 하는 사람을 한술 더떠서 벌금을 벌어오라는 명목으로 공장에서 일을 더하라고 뇌물려 보내기 까지 하고 있다. 게다가 공장에서 임금체불이나 산재를 당해 당국에 신고를 하면 불법취업자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팔이 잘려나간 사람이 보상

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벌금을 부과하는 야만적인 행위를 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번 법무부 목동출입국관리소의 벌금부과로 인한 고 임호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미 예견되었던 일로써 한국시민사회와의 목인과 한국정부에 의해 고의적으로 행해진 야만적인 살인행위라 규정한다.

우리들은 이번 중국교포 고 임호씨의 죽음에 대하여 한국교회와 시민사회에 도덕적 회개와 더불어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아울러 정부에 다음사항을 요구한다.

- 한국정부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국적과 신앙과 인종과 사회적신분에 편견없이 평등하고 균등한 치우를 받는다는 인류공통의 기본원리를 준수하라!

-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신분으로 뮤어 놓고 노예노동을 시키는 이중적이고 반인권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중지하여 한국 사회의 노동과 물질사상을 바르게 하라!

-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외국인의 노동을 필요에 따라 목인하면서도 출국할때 벌금을 부과하여 임금을 빼았는 이중적인 착취행위를 중단하고, 벌금법을 철폐하라!

- 정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월급도 떼이고 손, 발이 잘려나간 후 보상과 치료조차도 못받은 산재재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도 벌금을 부과해 왔는데 이와같은 야만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 목동출입국관리소는 사망한 고 임호씨의 유족에게 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고인의 누나와 동생이 출국할때 벌금없이 나가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이 사건을 무마하였는데, 사망자에게 부과한 벌금전액을 환불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

-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출국하는 3세계 외국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반말 등 기타 폭력적인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기업주의 폭행과 구타, 회사에서의 장시간근로, 임금체불, 산재 등을 이유로 출국을 원했거나 주거이동을 한 외국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여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돋는 부도덕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993년 11월 24일

외국인노동자 피난처(신도림상담소), 구리노동상담소, 구로희년선교회, 중국교포상담소, 경성연기침례, 안양근로자회관, 복음파장학, 성남여민교회, 서울신내신세역, 성남산자교회, 제한외국인선교교회, 한국교회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 종신대 세남, 한국기독교학생연합회,